



중소기업 CEO & 창업자를 위한 재무·세무·증여·상속 실무 가이드

#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2년 뒤의  
변화는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뒤에 올 변화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나태함으로  
이끌지는 마라.  
- 스티브 잡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해진 삶의 시계에 따라  
시간과 자산을 운용하며 미래로 나아간다.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세금과 내 삶 이후를 설계하여  
나와 가족을 위한 성공적인 승계를 이루고  
세상과 조화하도록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자!  
- 이병원 (재무설계 전문가)

〈여성조선〉 특별부록 발행처 (주)조선뉴스프레스,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DMC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중소기업 CEO & 창업자를 위한 재무·세무·증여·상속·절세 실무 가이드,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의 저작권은 조선뉴스프레스에 있습니다.  
편집 내용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ologue

### 법인 절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과 CEO가 함께 행복해지는 미래를 준비하세요!

기업 경영에는 세무, 회계, 법무, 노무 등 다양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업무로 바쁜 대표가 이 모든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뉴스에 정통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악기의 특성과 연주자의 능력을 알고 컨트롤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하면  
알맞겠습니다. 세무 분야에도 평가, 가장 실무, 절세, 상속증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실질 업무에 따른 전문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기업 대표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절세설계의 실제와 기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절세와 가업승계,  
미래설계로 고민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재무설계전문가 이병원

tel. 010-5257-7674  
email. voicepop@hanmail.net  
web. www.smbnews.co.kr

## Contents

- 04 **INTERVIEW** | 피플라이프 BM마스타 사업단 이병원 지점장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 미리 준비하는 똑똑한 절세가 답입니다”
- 08 **GUIDE** | 국세청 엔티스(NTIS) 시스템  
1800억 개 빅데이터로 더 촘촘해진 세무행정
- 12 **ISSUE** | 중소기업 절세설계 핵심 포인트
  - Point 1 정관 내 절세를 위한 필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라
  - Point 2 리스크를 키우지 마라
  - Point 3 철저한 대비로 리스크를 차단하라
  - Point 4 늘어나는 세금, 법인전환으로 줄여라
  - Check List 나의 세금 설계 준비는?
- 20 **CASE** | 사례로 배우는 법인 문제
- 24 **KNOW-HOW** | 상속! 최상의 절세전략, 증여가 답이다
- 28 **COLUMN** |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 배당투자에 주목하라
- 30 **PLUS** | 중소기업 CEO & 창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소득유형별 세금



##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 미리 준비하는 똑똑한 절세가 답입니다”

피플라이프 BM마스타 사업단 이병원 지점장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나가는 세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가계에 비해 큰 단위로 돈이 움직이는 만큼,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익의 차이는 커진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둬야 할 기업 재무설계, 상속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피플라이프 BM마스타 사업단 이병원 지점장에게 들었다.

손수 회사를 설립한 대표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 운영자도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회사가 안고 있는 재무 문제를 속속들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 재무설계 전문가로 다년간 활동하고 있는 피플라이프 BM마스타 사업단 이병원 지점장. 기업 재무와 절세설계 분야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자부하지만, 여전히 청강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만큼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회사 관련 재무 RISK 문제를 말씀하게 해결하려면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보험설계사 등 수많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워낙 분야도 다양해서 법인 문제들을 한 명이 해결하려면 아마 천 년은 공부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기업 재무설계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문제들을 제가 직접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기업 재무 분야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각 악기의 특성과 연주자의 능력을 알고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모든 악기를 직접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을 사용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 재무 전문가로서 그의 입지는 다양한 전문가와 소통한 결과다. 다소 막연했던 내용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쾌하게 풀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이병원 지점장은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음반을 5장이나 낸 가수 겸 작곡가. 한때 음치는 불치가 아님을 증명하며 전국 수천 명의 음치에게 노래하는 즐거움을 선사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음치클리닉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인생 후반기에 선을 대신 숫자와 법으로 이뤄진 기업 재무설계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이 있어요. 음악 생활 이후에 개인 회사도 운영해봤고, 법인도 운영해봤거든요.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랐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절세설계와 몰라서 생긴 탈법적인 일을 바로잡아주는 이 일에 매력을 느껴요. 기업을 돕는다는 보람도 느끼고, 기업주에게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해결점을 도출할 때는 짜릿하기도 하죠.”

### 안타까운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들

이병원 지점장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대표들을 만난다. 같은 업종의 회사를 운영해도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폭넓은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대표들이 기업

사진: 신승희 촬영협조: 두잇 블리스크 강남소통(02-508-8937, www.dodot.co.kr)



### 이병원 약력

작곡가, 가수(1984년 데뷔 총 5집  
자작앨범 출판)  
국내 최초 음치클리닉 개발  
창직으로 자리매김  
**해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독일 시사주간지  
〈포쿠스〉 등에 대서특필, 영국 'ITN  
TV', 일본 'NHK', '후지TV', 독일  
국영방송 'ARD TV',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서 이병원만의 독특한  
양동이 음치 치료법 방송  
국내 KBS, MBC, SBS, EBS 방송  
고정 출연, 월드이벤트TV (이병원의  
가요교실) 등 케이블 채널  
가요프로그램 1000회 이상 방송,  
라디오, DMB 위성방송 MC 활동  
**저서** 〈음치클리닉〉(서교출판사),  
〈성공하려면 코끼리 쇠줄부터  
끊어라〉(조선일보생활미디어) 등

재무 운영 중 리스크를 키우거나 방지하고 있다.

“대표들이 열심히 노력해 회사 규모를 키우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기업이 벌어들인 자금의 흐름도 시기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흐름이 막히면 평생 일구어놓은 금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아직이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기업 운영에 있어 탄탄한 재무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재무 담당자가 있는 기업도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는 재정 관련 업무만 처리할 뿐 기업의 시기에 따른 자금의 흐름 즉 재무, 세무, 증여, 상속, 절세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 결과 **자금이 적체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운용돼 생긴 부자 회사의 기만한 CEO가 생각보다 많다. 이익환원 시기를 놓치고 자산 대부분을 회사에 쌓아놓은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도 발생한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이익을 환원하고 소득유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그래야 나중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절세효과를 크게 거둘 수도 있지요.”

이병원 지점장은 절세라고 하면 따라붙는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선입견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청에서

도 미래를 위한 절세 가이드북을 만들어 안내할 만큼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수익이 늘고 탄탄해져야 국가 경제도 단단해지는 만큼 적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수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한다.

### 미리 준비하는 상속세, 기업과 가족을 살리는 길

법인의 세금 리스크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 유고 시 발생하는 상속세다. 회사의 승계에는 증여 또는 양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물론 대표 가족까지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기업 승계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은 승계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계와 관련된 상속 준비를 못 하는 실정이에요. 페이퍼 자료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IT 최강국에 걸맞게 거의 모든 세무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요. 재산을 빼돌릴 수도, 숨겨놓을 수도 없는 셈이죠. 그래서 현재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순자산 규모가 일정 이하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순자산 규모가 커서 자산 대비 상속세율이 50% 이상이라면 회사를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20년의 기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승계는 계주 경기와 같아요. 계주는 바통터치가 생명이잖아요. 우사인 볼트처럼 잘 달려도 바통을 놓치면 끝이죠. 기업 승계도 바통터치처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기업이라도 회사의 가치는 계속 커지잖아요. 10년~20년 시간을 두고 미리 계획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병원 지점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가치가 1백억원, 부동산 포함 개인 재산이 20억원일 경우를 예로 들었다. 승계 준비 측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공제금액을 제한 세금이 무려 34억원에 달한다. 가업승계를 못 하는 것은 물론 애써 일군 기업을 타인에게 넘겨야 한다. 심한 경우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가 겪는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보금 관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집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그때부터 EXIT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상속세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지점장은 “자산 대비 20~30%에 해당되는 금액의 준비가 필요하다. 단 자신의 크기가 커져도 증여 등 사전 가업승계 여부에 따라 준비할 상속세는 적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 최고의 승계 및 상속세 대비법

상속세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종신보험이다. 법인 운영자는 물론 일반 자산가의 상속에도 유용해, 강남 자산가들이 손꼽는 절세법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필요자금의 약 60~70%만 매달 나누서 불입하므로 부담이 적은 반면, 가입자의 사망 시 가입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어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중 으뜸이다. 보험기간이 길어도 남은 보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어 회사나 개인의 리스크를 모두 담보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은 해약으로 인해 원금이 보장되는 시점까지 약 15~18년 걸린다는 것. 조기에 해약하면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로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복리로 굴러가므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 알맞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대략 8~9년 정도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되지만, 사업 리스크 해결과 위험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되 절세효과를 위해서는 계약자가 중요하다”고 이 지점장은 설명한다.



1 SBS 뉴스에 소개된 영국 ITN TV 촬영 현장. 2 라디오 방송 진행 모습. 3 양동이를 쓴 독특한 방법의 음치클라닉 수업.

“150억원의 자산가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약 48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상됐죠.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셨지만 상속설계 후 올바른 보장이 준비되어 다행이라더군요. 문제는 보험 역시 잘못 설계해서 상속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고 자녀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상속재산이 아닌데,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셨던 거죠.”

자녀가 계약자여도,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은 부모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된다. 때문에 임대수입이 있는 상가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그 수익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징수 환경이 변한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현금 영수증제도, 카드 공제, 전세계약 확정일자제도 등은 납세자 보호 측면도 있지만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죠. 이제는 컴퓨터 자판 하나 누르면 모든 근거가 다 나와요. 탈세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적법한 절세 방법을 구해야 해요.”**

인터뷰 도중에도 이병원 지점장을 찾는 전화가 이곳저곳에서 걸려와 상속세 관련 약속, 회사의 행사와 이벤트 상의, 대표의 개인적 필요를 요청했다.

“이 일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회사 상태를 살펴보고, 공감하고, 자기 회사라 생각하라.’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회사의 미래가 걸린 재무설계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그 걸과 많이 바빠졌죠. 사외이사라 부르는 곳도 있어요.”



## 1800억 개 빅데이터로 더 촘촘해진 세무행정 국세청 엔티스(NTIS) 시스템

2016년 국세수입은 2백42조6천억원, 재작년보다 24조7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치의 기록했다. 3대 세금으로 손꼽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고르게 세금이 더 걷힌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역대 급 세금 징수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의 엔티스(NTIS) 시스템을 꼽는다.

### 편의성 높이고, 탈세는 낮추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체납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7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를 통해 밝힌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세금에 대한 국세청의 맞춤형 서비스로 납세 편의성을 도우면서도, 탈세와 체납 행위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단호함과 투명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향한 의지. 국세청이 2015년 도입한 엔티스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엔티스는 최근 각 산업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빅데이터’의 세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국세청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총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엔티스라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을 진행했다. 2만2천3백여 본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무려 약 1천8백억 건이라는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했다. 20여 년간 축적된 전자세정 노하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집약체인 셈이다.

그 결과 과거 분산 운영되었던 여러 개의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이 완성됐다. 개별적으로 구축된 국세 정보 데이터가 통합 DB로 재구축되어 국세정보 간의 연계와 통합분석이 용이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 시기별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에 전산자원을 재배치,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전산자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정확성을 확보해 세정 신뢰도까지 높였다.

**이렇게 정교하고 투명한 국세청의 유리알 세무를 모르고 과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표들이 많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출을 숨기거나 증빙 없이 비용을 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전 탈법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벌어진 잘못들은 과징금이 불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탈법은 생각지도 말고, 정직하게 기업 운영을 해야 할 때다.**



## 알아두면 돈 되는 국세청 권장 절세요령

절세요령	절세효과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라.	10년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	2014년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종신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자식이 낼 상속세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을 할값에 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 전에 팔아라.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고시되기 전에 팔면 이전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분리과세를 하면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지만, 4천만원 이하의 종합과세는 17%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의 병원비는 부모의 재산으로 납부하라.	상속재산이 병원비 납부액만큼 줄어 상속세가 절감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므로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라.	부부 예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계산된다. 예금이 분산되어 있다면 소득이 줄어들어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미신고 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의 증여가 있었어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재산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시켜라.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서 재산을 취득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거래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취득세·등록세·부동산 중개수수료·인지대, 용도변경 개조비·냉난방 장치 설치비 등이 모두 공제된다.
상속세는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지 마라.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천8백억 건이라는 세금 데이터가 입력된 엔티스는 국세청의 탈세·체납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현실화하고 있다.

###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자료로 세무행정 강화

엔티스 구축 성과는 과연 어떨까? 국세청이 엔티스 운영 1년을 맞이해 밝힌 내용으로는 ‘한 차원 높아진 전자세정 서비스’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핵심적 역할 수행’, ‘효율적인 업무기반 마련으로 세정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각종 신고 항목은 물론 납부할 세액까지 모든 신고항목을 사전에 제공해 사용자의 편리를 더했다. 관리가 어렵고 신고 시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 과거 신고내역과 지출내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시스템의 정확성은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업무효율 향상과 세

수 확대라는 성과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국세청 직원들의 탈세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 그 결과가 바로 2016년의 세수 증가다. 엔티스의 1천8백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에는 수많은 동종업계 업체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자료에 따라 매출액을 예상하고 사전 통보해 낮은 세금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법 인카드 사용액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내용도 파악해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나 기업의 탈세 방지효과까지 톡톡히 거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엔티스 기능보강 계획을 잡고 있다. 파생상품 신고 관리, 소득세 ARS 신고, 일감 떼어주기, 상속재산 평가서비스,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 등의 기능을 2017년 5~10월까지 신규 보강할 예정이다. 편의성과 함께 촘촘해지는 세금제도의 망, 이제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15.1월)했다.

#### 탈세신고 포상금(산정 기준)

- 5,000만원 이상~5억원 이하 → 15% 지급
-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 7,500만원+5억 초과금액의 10% 지급
- 20억원 초과 →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5% 지급



## 중소기업 절세설계 핵심 포인트

주변 지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재무설계는 해마다 변하는 세법과 시기별로 특정 없이 주어지는 절세 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귀동냥으로 한 재무설계는 세법상 곤란한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과 기업 경영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기 쉬운 탈법에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연결하는 지혜를 공유해보자.

### POINT 1 ★

#### 정관 내 절세 위한 필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라

국가를 다스리는 법이 있듯이, 회사 운영을 위한 법도 있다. 회사법은 상법이나 세법에 준거해 정관에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다양한 절세설계를 할 수 없다. 정관에는 소득의 귀속처 유형, 시기 변경을 위한 지분설계, 이익회수, 위험보장 등의 필수사항을 꼭 구성해야 한다.

#### 등기사항

**상호**(등기된 상호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의 타인 등기상호 사용은 위법이다(상법 23조 4항)),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 **회사의 목적**(상법 317조 2항), **주식매수 선택권**, **주식 양도제한** 등.

####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공고의 방법 등

“법인의 절세설계 (TAX PLANNING)는 정관에서 시작되지만, 아직도 많은 비상장법인이 회사 설립 당시의 원시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럴 경우 개정된 ‘상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재무설계가 어렵다. 오랜 기간 정관개정이 없었다면 정관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식의 총수란? 미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라고도 한다. 이 주식의 총수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2011년 4월 14일 이전엔 회사 설립 때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현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상법 289조 2항). 따라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넉넉하게 규정해야 추후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절차 없이 신속한 실무 진행이 가능하다.

#### 절세설계를 위한 기재사항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중간배당, 주주총회의 의장(주주총회 개최 시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총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 주주총회 결의사항

대표이사 선임, 공동대표 선임, 신주 발행, 준비금 자본 전입,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자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

- 업종별 행정상 최저자본금 요건 외에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다.
- 주주는 임원일 필요가 없으며, 1인 주주도 가능하다.
- 설립 당시 자본금 규모가 작을 때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 소득의 배당을 통한 귀속처 변경을 위해 지분 분산설계는 꼭 필요하다.

#### 임원의 구성

-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및 감사를 결정한다. 이사 중 대표이사를 정한다.

- 이사는 3명(상법 383조 1항) 이상이면 수의 제한은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2명도 가능하다(상법 383조 1항).
- 이사가 1~2인인 경우 이사회 구성을 하지 못하므로 이사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주가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사 자격은 자연인으로 제한이 없다.

#### 감사의 선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 선임이 필요 없다(상법 409조 4항).
- 감사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등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411조).

#### 일반적 규정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 중 비과세 항목들은 규정요건 사항으로 규정에 명기해야 한다. \*대표적인 규정요건 항목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경조금

#### 중간배당

지분설계를 전제로 한 배당정책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최상의 절세전략이다. 정기배당만 한다면 결산확정 시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경우 배당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중간배당 규정을 제정한다. 회사의 유동성이 높을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탄력적인 배당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제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은 정관(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가능)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 설계는 필수다.



**POINT 2 ★**  
**리스크를 키우지 마라**

철저한 입출금 관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는 탈법을 없애라!

기업 영위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지만, 원치 않던 리스크도 함께 커가는 경우가 많다. 법인과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관청은 기업의 세금과 관련된 리스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대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인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를 살펴본다.

**절세와 탈세**

세금 절약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르다. 세법 허용 범위 내는 '절세'지만, 사기와 부정행위 방법의 절세는 '탈세'이며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 인정 범위 내의 합법적·합리적인 행위이다. 절세에 비결은 없다. 세법의 이해와 적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절세 비결**

철저한 증빙자료 수집, 명확한 장부정리

-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 조세지원제도 활용
- 세법 의무사항 준수로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 회피

**탈세(Tax Evasion)**

'탈세'란 사실왜곡 등 불법적인 행위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분식회계나 불법적인 자금유용 등 탈법을 하지 않아도 법 절차를 몰라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탈법의 원인은 달라도 추징되는 세금은 같다. 전문가와 상의해 기업 운영 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국가재정을 축낼 뿐만 아니라 탈세한 금액만큼 타인이 내야하므로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본다.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로 세금누락이 밝혀지면 추징은 물론 구속당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

회계상 가지급금은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 과목이다.

발생 원인은 거래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한 발생과 불법 노동자 고용,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즉 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일시적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납입 후 회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증빙 없이 자금이 인출된 경우,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출해 간 경우에도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부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갚지 않고 회사를 없애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관련 내용을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100% 발각된다.

**plus**

**가지급금 리스크**

- 가지급금 인정이자(4.6% 복리) 증가로 법인세 증가
- 차입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기업 신용도 저하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
- 국세청의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위험
- 주식가치의 증가로 상속증여세 증가
- 청산 폐업 시 상여처분

**가수금**

가지급금과 반대의 경우로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대표 자신의 채권이다. 실제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라면, 가수금만큼 자본전입을 하거나 회사로부터 돌려받으면 된다. 하지만 간혹 증빙되지 않은 수입 즉 매출누락이 가수금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누락금액의 3배 추징과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발생시키면 안된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상속, 증여세 회피 목적의 신탁이 있다. 이전의 상법상 발기인 규정은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이었다. 해당연도에 설립한 법인은 상법상 명의신탁을 한 경우가 많다. 반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식명동 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천7백2명에게 1조1천2백3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배신, 증여세금 추징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리스크다.

**불균등증자**

일정한 자본금을 요구하는 관청의 일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증자를 한다. 증자 시 다른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시키지 않고, 대표나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만 증자할 경우 다른 주주들의 주식비율이 낮아진다. 그 결과 증자 당사자는 본의 아니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때 생긴 이익을 과세관청은 증여이익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 POINT 3 ★

## 철저한 대비로 리스크를 차단하라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 국내 증견 증자업체 '농우바이오', 여성복업계의 지존 '한섬'도 애써 일군 회사의 승계에 실패했다.

기업 대표는 회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모든 것을 기업 운영을 위해 담보했다. 회사를 일구기 위해 가정도 포기하고, 미래마저 회사에 담보했다. 한국 기업 대표 대부분이 이러한 자수성가로 회사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승계 리스크나 대표의 사고 및 사망 리스크 보장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애써 일군 회사를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중한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유족보상 플랜을 수립하라

유족보상은 법인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해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을 말한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준거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데 통상 급여의 1천3백 일, 장례비로 1백20일을 합해서 총 1천4백 20일 분을 지급한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의 산재 의무가입은 실제 가입율이 1%도 되지 않는다. 산재에 가입을 했더라도 임의가입으로 근로자 급여에 준거하므로 직무 크기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근로자와 달리 대표는 휴일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보상 규정과 수급에도 이견이 있다. 그러므로 정관에 유족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을 회사 내에 마련해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법인의 회수를 실행하라

기업 경영에 따른 법인의 이익만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유형에 따른 소득세도 납부한다. 주주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유형은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금 등이 있다. 지급하는 소득유형에 따라 과세체계 및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유형 변경만 잘해도 절세가 가능하다.

### 다양한 소득 관련 요소 변경을 이용해 절세하라

- 소득의 유형(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금 등)
- 소득의 귀속처(사전 증여)
- 소득의 귀속 시기(세법의 변화, 세율의 변경 등 과세기간의 귀속 시기를 바꾸어 절세효과 달성)
- 소득의 귀속 장소(과세소득의 기준 및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 절세효과 달성)

※ 소득유형 변경 예-차등배당

배당의 경우 일반적인 배당, 배율로 하는 배당,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높은 절세가 가능하다.

### 기업 운영의 결승점, 승계를 준비하라

중소기업 CEO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업승계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승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승계는 계주경기라도 같다. 우사인 볼트 같은 최고의 선수가 달려



“법인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세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입출금 관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는 탈법을 없애는 것이다.”

도 바통터치에 실패하면 실격한다. 최고의 선수들도 경기 초반부터 바통터치를 염두에 두고 달리듯 기업 승계도 기업의 성패가 걸린 사업 초기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004년 맥도날드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한 시간도 안 돼 사망하자 이사회는 사망 세 시간 만에 화상회의를 열어 신임 CEO를 선임한 바 있다. 미리 CEO 승계를 준비한 덕분이다.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같은 유량 기업들처럼 승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승계에 필요한 주식 이전, 상속재산의 귀속처 변경, 보장자산의 적절한 운용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기업 운영의 결승점 통과인 성공적 승계는 당신의 승리이며 자손의 행복이다. 수백 년 기업을 이뤄 영원히 기록될 당신의 이름을 남겨보라!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POINT 4 ★**  
**늘어나는 세금,  
 법인전환으로 줄여라**



법인은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개인기업으로 머물거나 법인과 개인기업을 함께 운영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돈 낭비를 부르는 오해다. 개인기업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대표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최적의 절세설계가 어렵다.** 성실신고대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 등과 함께 규모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을 잘 선택하여 절세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매출누락, 사업무관비용 처리불가 등)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업종별 성실신고대상**

업종	매출액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20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억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5억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 **개인기업** 기업활동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기업주 활동 제약이 적고 세무업무가 다소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본증가에 제한이 있고 신용도가 취약하며 소유와 경영 분리가 되지 않아 절세 승계가 어렵다.
- **법인기업** 소유와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이다. 주식양도로 재산이전이 용이하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장점이다. 소득의 귀속처, 유형, 시기 조절이 가능하며 소유와 경영 분리로 안정적인 절세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면을 받지 못한다.
- **사업양수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그 외 세금면 양수도 방식, 개인기업과 병행,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식이 있다.

**법인전환 시 세금 문제**

법인전환 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이전엔 양도소득세, 기계장치 등의 이전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의 법인명의 이전 시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둘 모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 기계장치 등은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둘 다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법인명의 이전 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CHECK LIST ★**

**나의 세금설계 준비는?**

올바른 세금설계를 위해서는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 진단표의 30개 항목을 체크해 10개 항목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소득유형 설계**

- 01 정관에 임원보수 규정이 급여소득과 퇴직금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었습니까?
- 02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총 보수한도 규정이 정비되었습니까?
- 03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제정되었습니까?
- 04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정비되었습니까?
- 05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비되었습니까?
- 06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이 정비되었습니까?
- 07 정관변경 수행 시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까?
- 08 매년 임원보수 결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09 임원퇴직금 규정정비와 지급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 10 임원퇴직금 수령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 11 회사 지분을 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 12 매년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 13 매년 가지급금 및 가수금 변화를 알고 있습니까?
- 14 매년 세무사로부터 주요 자산·부채 변동내역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 15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 16 법인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상속세 준비**

- 17 회사의 비상장주식 주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18 매년 비상장주식가치의 평가금액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 19 개인 재산과 회사 주식가치의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알고 있습니까?
- 20 상속세 납부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 21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재산을 정기적으로 증여하고 있습니까?
- 22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알고 있습니까?
- 23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공제대상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 24 상속 시 자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예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리스크 대비**

- 25 회사의 부채 리스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26 CEO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27 CEO 리스크 보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28 종업원 사고나 사망 시 리스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29 종업원의 사고 리스크 방어를 위한 민영산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30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긴급자금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습니까?



## 사례로 배우는 법인 문제

법인은 민법, 상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다양한 법 규정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세무, 법무, 노무, 감정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들을 통해 법인 재무설계의 필요를 알아보자!

### 증자 후 부과된 증여세

고무제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M씨는 회사의 발전 속도에 맞춰 자본금을 증자했다. 그런데 증자 시 불균등한 증자로 이득을 보았다며 증자한 지 4년이 지날 무렵 증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결국 복리로 계산된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문제는 모든 주주가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혼자 증자하게 된 것.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의 주식비율이 낮아져서 손해를 보고, 불균등 증자한 주주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액면가 증자는 균등증자가 원칙이다.

###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 없는데 생긴 가지급금

대기업 출신의 플라스틱 가공업자 Y씨는 회사에서 급여와 상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회사 돈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대표인 본인 앞으로 수억원의 가지급

금이 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이유를 알고 보니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와 회사 업무상 사용했던 비용의 자금지출을 증명할 수 없어서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잡힌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금의 이자가 4.6% 복리로 계속 늘고 있었다는 사실. 이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라 커지는 대표의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대표 개인의 신용담보와 회사의 모든 리스크를 홀로 안고 가야 하는 Y대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비용 때문에 떠안은 리스크로 억울하며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행히도 다년간의 노력으로 가지급금 상황에 성공했다.

### 지인 얘기만 듣고 미룬 법인전환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K씨, 사업매출 규모가 25억 원으로 성실신고대상의 기준을 한참 넘었지만, 법인전환을 계속 미루어왔다. 법인은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고, 자금 운용 면에서 제약이 많아 후회막급이란 지인들의 얘기를 들은 결과다. 이 때문에 법인과 개인 회사를 함께 운영 중인 지인도 있어 긴 망설임을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기업으로는 법인만 가능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득 변형으로 할 수 있는 미래설계와 절세설계가 안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포괄양수도로 영업권 평가 등 다양한 혜택에 만족하며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많은 기업이 법인을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다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칼등으로 고기를 써는 것과 같다. 어떤 일든 마찬가지지만 귀를 잘 열면 편한 세상이 열린다.

### 주식 매입 후 부과된 취득세

목재를 가공하는 법인 대표 K씨, 법인 설립 당시 그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49%의 주식을 가졌고, 나중에 30%의 주식을 양도로 가져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79%만큼의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50% 이하의 주식을 가진 것이 화근이었다. 실제 법인 출발 때 100%의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주식을 나누었다가 다시 주식을 가져왔다면 취득세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실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초기에 바른 세팅이 필요하다.



## 법인 청산 중 알게 된 의제배당세

육각공 전문법인을 30여 년간 운영하던 J씨. 마땅히 기업을 승계할 자녀가 없어서 청산 절차를 밟다가 생각지도 않은 10억원대의 의제배당세를 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사실 재무제표상 자산은 장부가이고 회사에는 현찰이 없는 상황이었다.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있어야 청산이 가능하다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청산을 미루게 되었다. 청산하려면 무작정 청산 절차를 밟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갑자기 닥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든

### 여기치 못한 상속세

**부자 회사 가난한 CEO의 비극인 경우다.** 화장품 제조업체 K부장은 부모의 기업을 이을 준비를 하며 부친의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밟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친이 갑자기 유고하며 날아든 상속세 때문에 수십 년간 키워온 회사를 승계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연 매출이 2백억~3백억원에 달하는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모든 재산을 회사에 쏟아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부친께서 얼마 무슨 일이 있을까하며 계속해서 회사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탓이다. 결국 개인 재산과 합산되어 반드시 내야 하는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극단적인 예다. **하지만 실제 세계 1위 손톱 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 국내 굴지의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등도 상속세 때문에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내주었다.**

### plus

## 상속세는 결국에 내야 하는 이연된 법인세

상속세는 언젠가는 내야 하는 이연된 세금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응하는 재원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다. 통상적으로 법인규모에 따라 회사 수익의 20~30%는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 설립 초기부터 오랜기간 준비하여 소득의 유형과 귀속처를 바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가족에게 분산하면 10% 미만의 재원만으로도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

## 성공적인 승계로 아낀 보장자산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M씨는 기업 설립 초기인 20여 년 전 지인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꼼꼼하고 생각이 많은 성격이어서 기업의 위험보장들을 준비 못 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린 결정이다. 종업원과 건물은 물론 대표 자신의 위험을 담보하는 단체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사업기간 중 자금압박의 시기에도 보험계약은 유지했다.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납입이 종료된 보험이 생기며 납입 부담이 줄었고 확장된 회사의 외형만큼 증액했다. 얼마 전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하고 퇴직할 때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입한 보험금이 효자 노릇을 토포했다. 늘 자금 사용 이유가 생기는 기업 특성상 만일 해약손실이 없다면 거액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M씨.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변에 보장자산 마련을 권하고 있다.

### plus

## 보험에 대한 오해

보험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잘 진화된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은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보장이나 건강을 위한 의료보장을 뛰어넘는다. 법인에게도 효용가치가 큰 필수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대표가 의외로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입견의 역할이 크다. 사고의 전환으로 보험을 활용한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보험은 저축수단 중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지렛대가 길수록 적은 힘으로 큰 장애물을 치울 수 있듯이, 보험을 잘 활용하면 커다란 힘을 내는 최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법인과 개인 자산이 많았지만

### 무사히 피한 상속세 폭탄

볼트 가공업체 A사는 10여 년 전 부친이 유고하셨는데도 3남매가 회사를 하나씩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결을 물으니 다음과 같았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조기퇴직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회사 설립과정에서 본인은 주식을 20%만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매년 가족에게 배당을 실시했다. 그렇게 모인 자녀의 자금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미리 상속을 준비했던 것이다. 생활은 자신의 급여로 충당하고, 자녀의 자금은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만일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같은 돈이어도 아버지 소유이므로 상속세를 최고 50%까지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A사 K씨는 모든 재산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해 자녀에게 모두 넘김으로써 상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K씨가 이런 절세전략을 세우게 된 것은 대기업 재직시절 협력업체를 관리했던 업무경력 덕분이다. 업체 중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경우를 가끔 보았던 것. 원인을 분석해보니 상속 준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장자산을 마련해놓지 않은 것이 문제였

다. 이런 문제를 보며 K씨는 법인 절세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옮겨 상속 대응을 위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을 수 있었다.

## 차명주주 사망으로 대신 낸 거액의 상속세

골판지박스 공장을 운영하는 J씨.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새롭게 4명의 명의를 빌려 회사 설립 후 자신은 부장으로 재직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했다. 사업이 잘되어 재미있게 일하던 중 20%의 주식을 가진 A씨가 돌연 사망하게 되었다.

A씨의 보유주식만 계산하면 상속세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사망 전 소유했던 부동산이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땅값이 치솟았다. 그 결과 주식가치를 합산해 50% 최고세율로 계산되어 상속세 4억5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5년 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회사의 상속세를 4억5천만원이나 낸 J씨. 속이 아팠지만 차명주주를 통해 회사를 운영한 값을 치른 것이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차명주주의 배신 등의 걱정, 명의신탁을 없애려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명의를 신탁한 대표들의 고민이 깊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천7백2명으로부터 1조1천2백31억원을 추징하며 명의신탁 양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 상속! 최상의 절세전략, 증여가 답이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의 세율은 무려 50%에 달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소득유형 변경으로 개인 자산화하고, 가족에게 사전증여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상속 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참고: 30페이지 상속세·증여세율표)

### 1 사전증여를 하라

10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 5년) 증여재산은 상속 시 합산해 과세한다. 합산된 증여재산은 증여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미합산되므로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사전증여 대상에 포함된다. 주가가 낮은 설립 초기에 증여하면 적은 비용으로 주식을 가족에게 옮길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주식가치 상승으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적극적인 증여는 필요하다. 가족 간 증여 공제(부부간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의 귀속처와 유형을 바꾼 해당 시행으로 상당 부분 증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사전증여의 장점

- ① 소득의 귀속처 변경으로 상속세가 줄어든다.
- ② 어린 자녀에게 10년 단위 사전증여를 여러 번 하면 자녀가 경제활동(사업, 부동산 취득 등) 시 자금출처 문제가 없다.
- ③ 증여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 매년 종합소득세가 절세된다.

### 사전증여 절세전략

- ①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사전증여하라.
- ②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라.
- ③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사전증여하라.
- ④ 증여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라.
- 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 Best 증여 사례

업계에서 증여를 가장 잘한 것으로 손꼽히는 사례가 2006년에 진행됐던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의 증여다. **자녀 둘(정용진, 정유경)에게 7천억원을 증여하고, 세금으로 약 3천5백억원을 납부했다.** 현재 시가가 수조원에 이르니 실제로는 **사전증여로 큰 이익을 본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증여세를 가장 많이 낸 사례로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증여를 가장 잘한 사례로 꼽는다.

### ★ 신세계 대주주 일가 주식지분 소유현황

	증여 전	증여 후
이명희 신세계 회장	15.33%	15.33%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7.82%	0%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4.86%	9.32%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0.66%	4.02%
계	28.67%	28.67%

※ 자료출처 : 신세계



## 2 배우자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을 공제해준다. 이 공제를 20년, 30년 장기간 활용하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 금융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마라

일반적인 금융재산은 예금된 가액 모두 상속재산이 된다. 반면 부동산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시가의 60~80%)하므로 상속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금융재산은 납부할 상속세만큼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4 금융재산 보유 시 연금상품을 활용하라

연금 형태의 금융재산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된다. 기간에 따라 30~40% 적게 평가되어 절세효과가 크다(상속세 및 증여 세법시행령 62조 1항).

## 5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고 받은 증여다. 10억원짜리 주택증여에 4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4억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1항), 증여자는

## 절세전략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소득세법 88조 1항).

## 6 재산처분·예금인출에 대한

###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라

피상속인의 인출금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는 2억원, 2년 이내에는 5억원을 소명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 1항). 미소명 시 80%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 7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감소시켜라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으면 최고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상속세 재원이 부족할 경우 평생 일궈온 회사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가치를 조정하고 은퇴시점을 예측해 소득의 귀속처, 소득유형 조정으로 주식가치를 조정한다.

## 8 10년 단위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라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상속재산을 예측해 **상속분쟁 예방(유류분 등)**과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실행한다.

## 9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라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한 만 60세인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할 경우를 살펴보자. 자녀가 5억원 공제에 30억원(5억~35억원)은 10%, 1백억원(35억~1백억원)까지는 20% 증여세를 납부하면 주식을 승계할 수 있다.

## 10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미리

### 점검하라

기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큰 폭의 절세가 가능하다. 10년 이상~15년 미만은 2백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은 3백억원, 20년 이상은 5백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9번의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 10번의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공제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 배당투자에 주목하라

글 안동균(금융투자 전문가)

**글쓴이 안동균**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출연, 한맥레프코션물  
투자전략팀 과장,  
HMC투자증권 리테일  
업무팀장, 신한금융투자  
PB팀장,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토마토증권방송 등 출연



## 그리스 탈레스 이야기

고대 그리스의 밀레투스라는 지방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탈레스는 매우 가난해서 주위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다. 주위의 그런 조롱이 싫었던 탈레스는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것이지 자신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점성술을 공부했던 탈레스는 그해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올리브가 대풍작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그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압착기 소유주에게 선금을 주고 그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샀다. 압착기는 올리브유를 짜는데 사용되므로, 아직 추수가 아닌 때에 미리 선금을 받은 압착기 주인들은 뜻밖의 횡재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탈레스는 실제로 압착기를 빌리는 데 지불해야 할 사용료도 압착기 주인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침내 올리브 수확기가 되었을 때, 탈레스가 예상한 대로 올리브는 대풍작이었다. 올리브 생산자는 엄청난 양의 올리브를 가공하기 위해 압착기가 필요했으나, 압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탈레스 한 사람뿐이었다. 탈레스는 압착기 소유주에게 자신이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압착기 사용료로 책정하여 올리브 생산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이후 어느 누구도 탈레스를 업신여길 수 없었다.

탈레스는 현대 금융공학의 첨단 파생상품 중 하나인 '옵션거래'를 한 것이다. 탈레스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걸맞은 투자를 통해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됐다. 지금의 시대 상황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금리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분위기가 있지만, 과거와 같이 10% 이상의 고금리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기고 그 이자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금리 수준도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수 있지만, 증권회사 PB팀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는 독자들에게 배당주식투자를 권하고 싶다.

## 투자의 대가 제러미 시겔\*의 배당투자

“배당주가 좋은 이유는 기업들에게 이익이 났으니 그 이익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배당투자의 매력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은행이자로 생활이 곤란한 저금리 시대에 위안이 될 수 있는 투자방법 중 하나이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라는 연막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가려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짜내었던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회사가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업체라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의 눈과 귀를 막아 올바른 투자를 방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방법 중 하나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인 회사라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장기투자자와 배당투자의 매력을 <투자의 미래>라는 책으로 소개한 제러미 시겔의 말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방법 중 하나는 기업의 배당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투자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투자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부면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각 나라의 경제적 여건** 1950년대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미국과 박스권을 유지하는 한국은 주가의 흐름이 다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근시안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낮은 위험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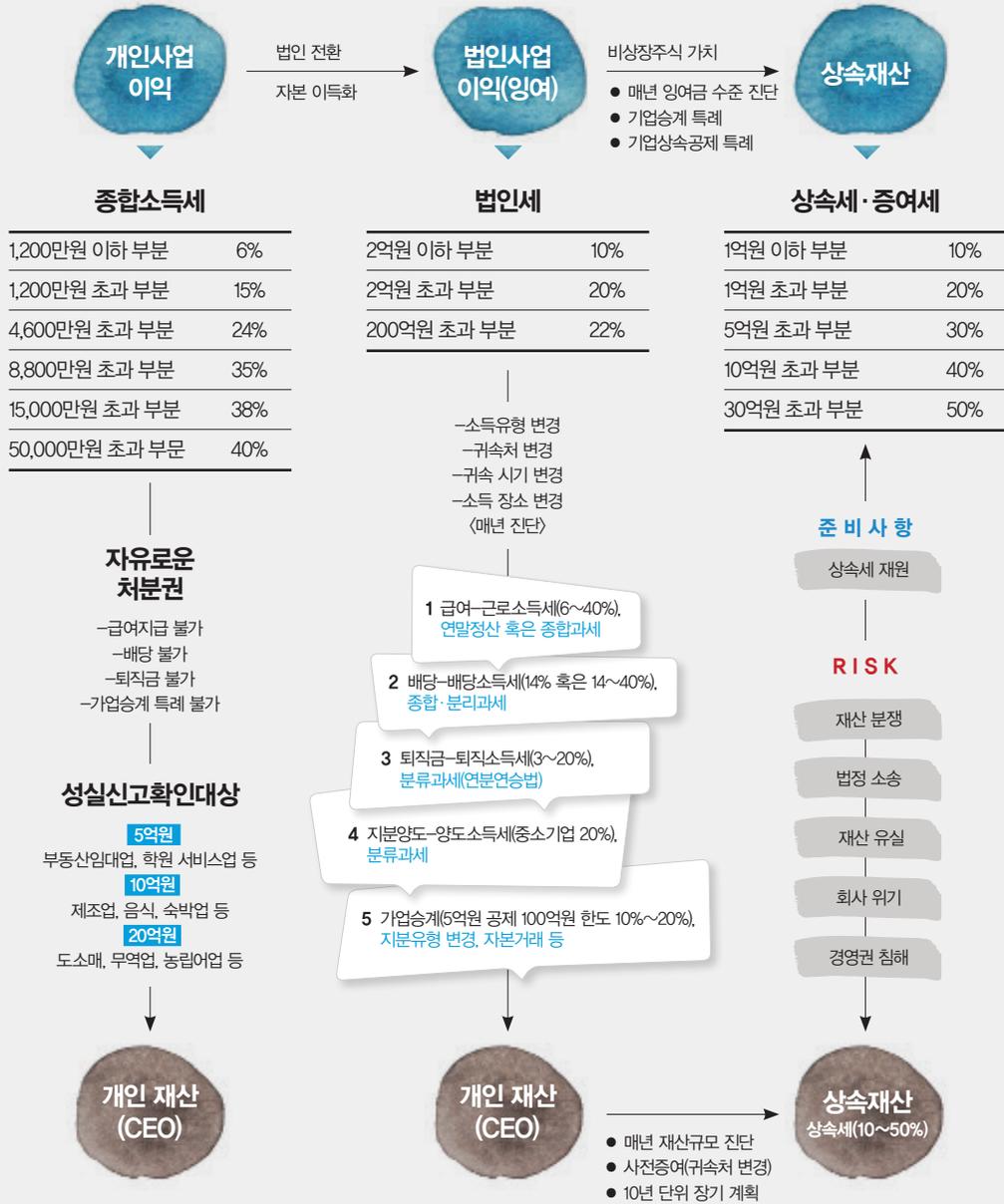
**2 배당락**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된다. 현금으로 배당하게 되면 주식 수가 달라지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변함없다. 하지만 주식배당을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에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인 회사의 주가가 1만1천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의 기준 가격은 1만원이 된다.

**3 수익모델** 기업 평가에 있어 배당수익률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향후 수익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매년 수익을 내는 기업인지(통상적으로 5년 정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간혹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수익 거의 전부를 배당하는 기업도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배당을 싫어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워런 버핏은 배당보다 재투자를 선호한다. 저성장 시대에는 고성장 기업을 찾기 어렵다.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적절한 수익을 배당하는 기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러미 시겔**  
주식분석가 겸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의 대가. 주식투자 전략에 있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1967년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중소기업 CEO & 창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소득유형별 세금



# 한 걸음 더 들어간 깊이 있는 뉴스

SMBNEWS를 열면 성공도 열립니다.

SMBNEWS는 중소기업 운영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깊이 있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위한  
 경영·재무·세무 전문 뉴스 사이트

# SMBNEWS

WWW.SMBNEWS.CO.KR

여성조선 특별부록

중소기업 CEO & 창업자를 위한  
재무·세무·증여·상속 실무 가이드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